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물가관계장관회의(9.6일 15:30~17:00) 관계로, **9.6일 17:00**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문신학 석유산업과장(02-2110-4890), 전동욱 사무관(5458)	

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 제도(혼합판매), 시장에서 본격 시행

◈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와 관련된 정유4사 협의결과 발표(8.1일) 이후, 각 社별 표준 계약서(안) 작성 및 검토가 완료

◈ 금주부터 폴사인 주유소에서 구분저장 없이 타사 석유제품 또는 수입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기 위한 계약변경이 가능

□ 지식경제부는 9월 6일, 「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 대책」(4.19일)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를 위한 주유소단계 계약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힘

○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란 폴사인 주유소에서 타사 또는 수입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으로,

○ 정유사-주유소간 자유로운 정률 또는 물량 계약에 따라 일정 부분의 물량을 구분저장 없이 섞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

□ 지식경제부가 석유제품 복수상표 자율판매(혼합판매)와 관련한 정유사 협의 결과를 발표(8.1일)한 이후, 정유4社가 이를 구체화한 계약서(안) 작성을 진행하여 왔으며,

○ 각 사별 계약서 표준안 공정위 제출(8.24일) 이후, 혼합판매 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였고,

○ 이에 따라 금주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무채권 주유소는 혼합판매 계약으로 변경을 해당 정유사와 협의할 수 있음

□ 다만, 혼합판매를 시행하는 주유소는 외부1곳(폴사인 기둥 또는 가격표시판) 및 내부 1곳(캐노피 기둥중 1곳)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고,

○ 물량확인 방안, 인센티브 차등 지원, 품질·제조물 책임소재에 대하여 정유사와 협의하여야 함(8.1일 보도자료 참고)

□ 혼합판매의 시행에 따라,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차단, 정유사간 경쟁 촉진, 기존 주유소 단계의 혼합판매 관행을 제도화하는 효과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